



제429회국회(정기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11호)

2025.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특수외국어 교원의 범위 확대	3
2. 국가의 책무에 전문인력 활용 추가	5
3.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과 협의의 무 등	7
4. 전문교육기관의 업무 추가	11
5.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	13
6. 개정안 부칙	16
[참고자료]	1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태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29.

3. 회부연월일 : 2025. 7.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베트남어·태국어·미얀마어·몽골어·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으로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이 증가하면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학습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지식과 구사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통역을 지원하는 등 다국어 학습 환경 조성 및 이중언어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특수외국어 교육의 현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

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인력 활용 대책을 추진하고,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특수외국어 교원의 범위 확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의 특수외국어 교원 정의에 초·중등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원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특수외국어 교원”은 「 <u>고등교육법</u> 」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초·중등교육법</u> 」 제19조제1항 또는 「 <u>고등교육법</u>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특수외국어 교원이란 대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음¹⁾.
- 개정안은 이러한 대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원 외에 초·중등학교의 교원²⁾ 중에서도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둘 수 있는 것

1)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으로 특수외국어 교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이를 통하여 초·중등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또한, 특수외국어를 전공한 대학생들이 특수외국어 교원으로도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2)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2. 국가의 책무에 전문인력 활용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의 책무로서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되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³⁾.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의 책무) ①·② (생략)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u>양성</u>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조(국가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양성·활용</u>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국가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양성’뿐만 아니라 ‘활용’에도 노력하여야 한다고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특수외국

3) (유사 입법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사회재활사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어 전문인력이 여러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3.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과 협의 의무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할 때에 시·도 교육감과도 협의를 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7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u>중앙행정기관의 장</u> 과 협의하여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① ----- ----- <u>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u>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u>양성</u>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 <u>양성·활용</u> -----
5.·6. (생략)	5.·6. (현행과 같음)
<신설>	7.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

7. (생략) ③ (생략)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① <u>교육부장관</u>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u>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① <u>교육부장관 및 교육감</u>----- ----- ----- -----. ②·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① 기본계획

- ☐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교육감과도 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 ☐ 교육감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각 지역별 특수외국어 교육 현황과 교육 수요·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현황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각 지역에 적절한 특수외국어 교육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뿐만 아니라 활용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도록 하고,
-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초·중등학교에서도 특수외국어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② 시행계획

-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교육부장관은 이를 기초로 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협의하여 하나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⁴⁾.
- 다만, 개정안과 같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개정내용을 규정하였을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각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좀 더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⁵⁾.

4) 동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태 의원실에 확인한 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각각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 시행계획을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을 의도하고 발의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5)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으로 주체가 표현되는 유사 입법례는 다음 법률들이 있으며, 실무적으로 두 주체가 협업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동 개정안은 유사 입법례와 달리 ‘강행규정’이므로 두 주체가 모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유사 입법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조치,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수집·연계·가공 및 제공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가공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의 경우에는 교육관련기관 중 관할 시·도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한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집·연계·가공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전문교육기관의 업무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전문교육기관의 업무에 두 가지 업무를 신설·추가하여 초·중등학교에서도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 ①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5. (생략) ② (생략)	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u> 6. <u>이주배경학생(「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학생이거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⁶⁾ 겪는 외국인 학생을 말한다)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특수외국어 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u>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6)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에서 이탈자가 있는 것으로 보임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전문교육기관⁷⁾의 업무로 4가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교육’,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특수외국어 교원의 연구·개발 지원’임.
- 개정안은 이러한 전문교육기관의 업무에 두 가지를 추가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을 신설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전문교육기관의 업무인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구분할 필요 없이 하나의 업무로 통합하여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7) 전문교육기관의 현황은 [참고자료 2] 참조

5.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국가 및 지자체가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2(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이하 이 조에서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센터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지도·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육센터의 설치·운

	<u>영,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배치</u> <u>· 운용, 행정적·재정적 지원에</u> <u>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u> <u>한다.</u>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의 개정내용과 같이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함)를 설치하여 초·중등학교에서도 특수외국어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교육센터에 두도록 함으로써 특수외국어를 전공한 사람들의 고용 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교육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재정이 소요될 것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추계⁸⁾를 바탕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안 제9조의2제1항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에 대한 정의⁹⁾만 마련되어 있고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는 따로 마련

8) 다만 2025. 9. 3.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개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등의 이유로 비용추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음.

9)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의 ‘교육기관’이란 표현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⁰⁾.

□ 안 제9조의2제2항에서는 ‘특수외국어 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지도·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교육센터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정의규정에서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정의하고 있으므로¹¹⁾ 이 조항에서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수외국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학생 증가와 학교 현장의 특수외국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초·중등학교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 교육센터 설치·운영 규정 등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한다는 입장임.

-
- 2.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 3.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 4. 특수학교
 - 5. 각종학교

10)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각종학교’를 설명하면서, ‘교육기관’이라는 표현을 한 차례 사용하고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1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추어 해당 언어에 능통한 사람을 말한다.

6.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일만 규정하고 있음(안 부칙).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에는 부칙에 시행일만 규정되어 있고, 어떠한 경우부터 개정안을 적용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를 각각 마련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검 토 의 견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

	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문 의 처
02)6788-5187

【참고자료 1】 고등교육기관 특수외국어 교원 현황

지역	언어	교원 수			비고
		전임	비전임	합계	
1.중동·아프리카	가.아랍어	7	21	28	아랍어과/아랍어통번역학과/아랍전공
	나.터키어	7	9	16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터키어전공/터키중앙아시아몽골학과
	다.아제르바이잔어	4	7	11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라.이란어	4	9	13	페르시아어·이란학과
	마.파슈토어	-	-	-	
	바.다리어	-	-	-	
	사.히브리어	-	-	-	
	아.하우사어	-	-	-	
	자.스와힐리어	-	-	-	
	차.줄루어	-	-	-	
	카.르완다어	-	-	-	
	타.암하라어	-	-	-	
2.유라시아	가.카자흐어	-	-	-	
	나.우즈베크어	-	-	-	
	다.키르기스어	-	-	-	
	라.우크라이나어	3	-	3	
	마.투르크멘어	-	-	-	
	바.타지키스탄어	-	-	-	
	사.몽골어	4	10	14	몽골어과/아시아중동학부 몽골학전공/터키중앙아시아 몽골학과
3.인도·아세안	가.힌디어	-	-	-	
	나.우르두어	-	-	-	
	다.산스크리트어	-	-	-	
	라.네팔어	-	-	-	
	마.벵골어	-	-	-	
	바.신할리즈어	-	-	-	
	사.베트남어	14	28	42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베트남비즈니스전공)/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베트남어과/베트남어전공/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지역	언어	교원 수			비고
		전임	비전임	합계	
	아.말레이시아어	13	20	33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인도 네시아·말레이시아전공
	자.인도네시아어	16	33	49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 학과/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인도 네시아·말레이시아전공
	차.태국어	9	15	24	태국어과/태국어전공/태국어 통번역학과
	카.미얀마어	3		6	
	타.크메르어	-	-	-	
	파.라오스어	-	-	-	
	하.타갈로그어	-	-	-	
4.유럽	가.폴란드어	3	6	9	
	나.루마니아어	3	7	10	
	다.헝가리어	3	7	10	
	라.체코어	4	6	10	체코슬로바키아어과
	마.슬로바키아어	4	9	13	체코슬로바키아어과
	바.세르비아어	4	3	7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사.크로아티아어	4	13	17	세르비아·크로아티아어과
	아.라트비아어	-	-	-	
	자.벨라루스어	-	-	-	
	차.조지아어	-	-	-	
	카.그리스어	6	5	11	그리스·불가리아학과
	타.불가리아어	6	5	11	그리스·불가리아학과
	파.이탈리아어	6	21	27	이탈리아어과/이탈리아어전공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하.네덜란드어	2	5	7	
	거.노르웨이어	-	-	-	
	너.덴마크어	-	-	-	
	더.스웨덴어	-	-	-	
	러.핀란드어	-	-	-	
5.중남미	가.브라질어	6	10	16	브라질학과/유럽중남미학부 포르투갈브라질학전공/포르 투갈(브라질)어전공
	나.포르투갈어	8	17	25	유럽중남미학부 포르투갈브라질학전공/포르투갈

지역	언어	교원 수			비고
		전임	비전임	합계	
					(브라질)어전공/포르투갈어 과
합계		143	266	412	

※ '24년도 하반기 고등교육통계 기준

※ 일부 학과의 경우 다개국어를 전공하고 있어 중복사항 존재(비고 참조)

【참고자료 2】 전문교육기관 개요 및 현황

- **(목적)**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업무 수행(인재 양성 및 국민 교육 기회 제공)
- **(근거)**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사업 기간) 3년** (3년마다 평가 실시 후,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
 - 연차별 사업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
 - ※ 단, 1차년도 사업은 협약 시점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 **(사업 경과)** 1차('18~'20년) → 2차('21~'23년) → 3차('24~'26년)
 - ※ '17년 법 제정 이후, '18년부터 전문교육기관을 단국대·청운대 컨소시엄, 부산외대, 한국외대로 지정·운영(단국대는 '25년부터 단독 운영)
- **(운영)** 국립국제교육원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계획 수립·시행
 - 국립국제교육원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관리운영 규정」,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 사업비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라 관리
 - ※ 사업관리위원회·컨설팅단 운영, 연차(종합)평가, 사업비 집행·정산 등 관리
- **(주요 내용)**

전문교육기관명	중점지원언어
단국대학교 (4개어)	몽골어, 베트남어, 아랍어, <u>포르투갈어·브라질어</u>
부산외국어대학교 (10개어)	라오스어, 말레이시아어·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크메르어, 태국어, 터키어, 힌디어
한국외국어대학교 (21개어)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라오스어, 말레이시아어·인도네시아어, 몽골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우크라이나어, 이란어, 이탈리아어, 체코어, 카자흐어, 크로아티아어, 태국어, 터키어, <u>포르투갈어·브라질어</u> , 폴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 밑줄은 하나의 언어로 간주

○ 전문교육기관 주요 사업

추진 과제	세부 내용
초·중등학생 언어·문화체험	초·중등학교 수업·체험 교육 지원
	특수외국어 배워보기 프로그램 운영
대학(원)생 전공 교육	특수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통·번역 인재 양성
	전공 간 연계 및 융합전공 교육과정 운영
	통·번역 동아리 등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특수외국어 국·내외 연수 지원
	장학금 및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
일반인 평생 교육	K-MOOC 강좌 개발·운영('18년~, 50강좌)
	스마트 콘텐츠(유튜브, 앱 등) 개발·제작
	특수외국어 배워보기 프로그램 운영
	특수외국어 평생교육 운영(일반인/기관·기업 대상)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원격연수 운영
산업 분야 지역전문가 양성	기업 연계 인턴십,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등
	취업·창업 관련 특강, 캠프 운영 등
다문화 가족 서비스 지원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풀 구축·운영
	교육청, 지자체 연계 통·번역 지원
	가족센터 연계 원어민(이중언어) 강사 교육 지원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 지원	공공기관 특수외국어 통·번역 지원
	통·번역 수요 공공기관 발굴 등 지역사회 연계 강화
	기관 연계 특수외국어 교육, 문화 행사 운영
특수외국어 능력 평가	특수외국어능력평가시험 홍보·활용·지원
	어학능력 평가 체계화 노력

【참고자료 3】 초·중·고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현황

지역	학교명	언어	비고
서울	경기고등학교	아랍어	- 서울시 관내 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점형 선택 교육과정 운영 - 학생, 학부모, 교사 희망에 따라 아랍어1을 개설하여 학기별 매주 월요일 방과후에 운영 (17:30~20:20)
광주	광덕고등학교	아랍어	- 제2외국어로 아랍어 개설 - 2학년 학기별 3학점으로 6학점, 3학년 학기별 4학점으로 8학점, 총 14학점 이수 가능 - 담당 교원: 1명
울산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아랍어	- 아랍어과 학년별 1개 학급 총 65명 재학 중이며, 1학년 학기별 6학점으로 12학점, 2학년 학기별 8학점으로 16학점, 3학년 학기별 7학점으로 14학점, 총 42학점 편성 - 담당 교원: 2명
충북	청주외국어고등학교	베트남어	- 영어-베트남어과 학년별 1개 학급 총 59명 재학 중이며, 1학년 41학점, 2학년 44학점, 3학년 44학점으로 총 129학점 편성 - 담당 교원: 3명(원어민 1명 포함)
충남	충남외국어고등학교	베트남어	- 베트남어과 학년별 1개 학급 총 55명 재학 중이며, 1학년 42학점, 2학년 44학점, 3학년 44학점으로 총 130학점 편성 - 담당 교원: 4명(원어민 2명 포함)
경북	경주에일고등학교	베트남어	- 제2외국어로 베트남어 개설 - 1학년 각 학기별 3학점으로 총 6학점 이수 가능 (1학년 109명 재학 중) - 담당 교원: 1명
경북	김천고등학교	베트남어	- 제2외국어로 베트남어 개설 - 2학년 학기별 3학점으로 총 6학점 이수 가능 (2학년 249명 재학 중) - 담당 교원: 1명